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제야말로 여러 국가의 법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각 국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의 지침 제정 등의 결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 실장)



1.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보호의 필요성

1
관계부처 합동,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안)”, 2015. 11. 10, 3쪽.

2
관계부처 합동, 앞의 자료, 1쪽.

3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Unleashing the Potential of Cloud Computing in Europe”, 2012. 9. 27 p.2.

4
http://ec.europa.eu/justice/contract/cloud-computing/expert-group/index_en.htm(2016. 7. 18 최종접속)

5
http://ec.europa.eu/justice/newsroom/contract/news/151209_en.htm(2016. 7. 18 최종접속)

6
박영규, “클라우드컴퓨팅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법조 2012. 8. (Vol.671), 192쪽.

IoT·빅데이터·모바일 등의 활성화에 따라 데이터량이 폭증하고 클라우드를 통한 트래픽이 대부분(76%)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SW 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업, 통신사 등 다양한 ICT기업이 클라우드 시장 선점을 위해 진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¹

이러한 경향에 따라 세계 각국은 ICT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투자와 기술을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법과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며, 세계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5년 3월 27일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입법을 실현한 국가이다. 이 법 입법이후에도 범정부차원의 ‘K-ICT 전략’(15.3.)과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6~18년)」을 수립·시행하여, 공공·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통해 비용절감·업무혁신을 하고, 취약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²

이와 같이 클라우드컴퓨팅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ICT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서비스분야라 할 수 있으며, 미래산업의 바탕이 되는 기술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기존의 논의들을 통해 어느 정도 논의가 정리된 클라우드컴퓨팅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면, 우선 EU에서 ‘클라우드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서 컴퓨터의 데이터를 저장, 처리 및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은 사용자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본 투자를 하지 않아도, 수요에 따라 거의 무제한 컴퓨터에 명령을 할 수 있고 어디서나 인터넷 연결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³

우리나라의 ‘클라우드컴퓨팅법’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여 “직접공유된 정보통신 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제2조제1호).

이와같이 이용자 측면의 입법적 접근은 이 산업영역에서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성장과 확대에 따른 이용자보호는 우리나라의 입법 진행과정에서부터 입법이후까지도 계속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등 ICT는 미래산업에 포함되는 중점분야로 우리나라의 독립적인 법제도 수립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정책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클라우드컴퓨팅에 기반한 정보의 저장이나 서비스 제공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쟁점이 해결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에 대한 해외의 정보보안 및 계약관련 이슈 등 이용자보호의 논의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한 계약에 관한 법적 쟁점이 여러 시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EU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2013년 6월 18일 위원회 내 “클라우드컴퓨팅 계약관련 전문가 집단 설립에 대한 공식 결정”을 발표하였으며,⁴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현대 디지털 계약 원칙”을 제안하는 등⁵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공정한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의 실현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 클라우드컴퓨팅의 정보보호와 보안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입법과정에서 제기되고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클라우드컴퓨팅관련 가장 큰 쟁점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 관련법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운용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7
2015년 WTO에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범은 매년 15%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중 상당의 자료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5. 12. 15. 재인용 (http://www.moi.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8&nttid=47865), 2016. 8. 3. 최종방문.

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42702109960813013(디지털 타임스 2016. 4. 27 기사 참조), 2016. 7. 26 최종방문.

9
박종수, “클라우드 컴퓨팅과 정보보호”, 법제연구 제 46호, 2014. 63쪽.

10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5. 12. 15. 1쪽 (http://www.moi.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8&nttid=47865), 2016. 8. 3. 최종방문.

11
이 평가는 OECD의 개인정보원칙을 반영하여 EU에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미 OECD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5. 12. 15. 4쪽 참조. (http://www.moi.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7865), 2016. 8. 3. 최종방문.

12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5. 12. 15. 1-2쪽. (http://www.moi.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7865), 2016. 8. 3. 최종방문.

수집되거나 가공되어진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책임은 국내법에 의해 정해진다.⁶ 이와 같은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적용원칙은 다른 국가에서도 대동소이할 것이며, 여기에서 클라우드컴퓨팅의 개인정보 관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클라우드컴퓨팅 자체의 가장 큰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보의 이동은 국경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저장, 제공되는 기반이 국외에 있는 경우를 당연히 고려하여야 한다.⁷ 실제 대부분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회사는 다국적 기업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기존의 통신관련 법률이나 보안관련 법률의 내용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⁸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와 보안 관련 EU에서의 규제 추이는 기존의 EU의 정보보호지침에서 유럽연합 밖에서 정보를 수집, 처리 및 저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⁹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클라우드컴퓨팅의 특성인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정보의 이용, 서비스 제공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의 특성에 비추어보아도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서버를 두도록 하여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EU의 경우 회원국 내에서의 규제수준 평준화를 위해 이미 오랫동안 그 작업을 하여 왔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규제수준의 평준화가 선결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에도 EU의 움직임을 고려하는 것은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에서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EU의 규제동향을 검토하였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EU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국가의 기업에 한하여 역외이전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⁰

EU의 이러한 정책에 따라 2015년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내로 전송하여 처리해야 할 경우, EU 회원국과 사전에 국외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손해를 해소하고자 EU 집행위원회에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¹¹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¹²

우리나라가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으면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EU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영업 활동이 가능해지고, 추가 절차 없이 EU 시민의 개인 정보를 우리나라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¹³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특성으로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제도를 반대로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떤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최초의 입법을 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빠른 상황이고, IT분야에서는 가장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EU에서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이를 충족하는 법제를 갖춘 국가에 대해서만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클라우드컴퓨팅법」의 개인정보, 보안 관련 규정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주체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나 개인정보의 저장위치 등에 대한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들 조문은 선언적 규정으로 권고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에 그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를 고지하도록 한 것은 이미 입법되어 있다. 다만,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위치가 여러 곳이고, 이 중 선택하여

13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5. 12. 15. 2쪽. (http://www.moi.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7865), 2016. 8. 3. 최종방문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표준화 논의

14

국제표준화기구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이자 인증이다. 정보보호정책, 보안정책, 위험관리 등 정보보안 관련 11개 영역, 133개 통제항목에 대한 심사와 검증을 통과해야 인증을 얻을 수 있다.(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5491&cid=42107&categoryId=42107> 2016. 8. 17. 최종접속)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해킹 등 불법적인 파괴나 변형, 허가되지 않은 정보의 공개나 접근에 대해 적절한 보안조치를 사전에 시행해야 한다는 점은 주지된 사항이다. 다만, 적절한 보안조치의 수준을 상정하는 기준이 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ISO27001¹⁴을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도 이 표준을 획득하여 사용하고 있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제표준이 클라우드컴퓨팅의 보안을 확보하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있다.¹⁶

15

우리나라 기업의 ISO27001 획득에 관한 기사 참조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70491&g_menu=020800&rif=nv 2016. 8. 17 최종접속)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ITU 전권 회의(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Plenipotentiary Conference) 결의130에서는 정보와 소통기술의 이용에 관한 보안과 기밀성 유지를 위해 ITU가 하는 역할 강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에는 스팸, 맬웨어(malware) 등 개인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문제의 해결 방법과 안정성이 포함되며 클라우드 솔루션의 정보처리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표준을 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

16

ITU, 『Privacy in Cloud Computing』, 2012. 3, p.12.

세계표준협력회의(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 ; GSC)는 국가 간 표준화가 아닌 범세계적 표준화를 위해 GSC 용어와 용어의 정의, 구성과 과정의 표준화가 국가나 지역 단위의 우려를 동일하게 반영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덧붙여 이러한 표준화 과정은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연구영역을 포함 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범위 내에 있는 활동들에도 표준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⁸

17

ITU, 『Privacy in Cloud Computing』, 2012. 3, p.10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쉽게 구성되어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개발자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편의성이 도모되어야 함은 다르지 않다. 따라서 표준방식의 도입은 클라우드컴퓨팅의 광범위한 구성원들 간 상호운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8

Id.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컴퓨팅의 개별적인 표준지침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19

ITU, 『Privacy in Cloud Computing』, 2012. 3, p.14.

다만 2010년 4월 이후 ITU에서 ‘통신 영역에서의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Security guideline for cloud computing in telecommu-nication area)’,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통신 서비스 환경의 체제와 보안에 필요한 요건들(Security requirements and framework of cloud based telecommunication service environment)’, ‘통신조직을 위한 개인정보 관리 지침(Guideline for management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or telecommunication organizations)’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대해 볼 만 하다.¹⁹

4. 클라우드컴퓨팅 계약 관련 이용자 보호

20
ITU, "GSR 2012 Discussion Paper Demystifying Regulation in the Cloud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Cloud Computing", 2012. 10. 19, p.16

21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Unleashing the Potential of Cloud Computing in Europe", 2012. 9. 27 p.11

22
Id p.11

23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52015PC0634&from=EN>). (2016. 7. 27. 최종방문)

24
http://ec.europa.eu/justice/newsroom/contract/news/151209_en.htm (2016. 7. 27. 최종방문)

25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52015PC0634&from=EN>, (2016. 7. 27. 최종방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이용자가 있을 것이고 이들 이용자는 각 국가별 계약법제를 인식의 기반으로 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도 여러 국가의 법을 적용 받아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국가별 계약 관련 법제의 차이로 인한 법 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계약 용어의 사용이나 계약조건의 해석 등에 관련한 문제가 이에 해당 될 것이다.

한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동일한 계약 용어를 사용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도 국가별 계약법제의 차이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의 법 이해가 다르게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계약과 서비스 수준협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다양화 되어가는 시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관계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로 검토될 수도 있는 반면, 소비자가 관여되는 경우에서는 서비스의 질, 정보 이동성, 혹은 정보의 소유권 등 소비자가 고려하는 핵심사안을 다루는 표준 조항 사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구된다.²⁰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유럽 공통매매법(Common European Sales Law)」에 대한 제안서에서 디지털 아젠다 하의 신뢰성 구축과 관련하여 통일되지 못한 규정으로 계약을 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²¹

EU에서는 기존 EU 의회의 규칙 등을 통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들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특히 계약법에 관한 질문이 발생하였을 때 민사 및 상사의 문제와 관련하여, 적용가능 한 법이나 관할을 포함하여 EU 회원국 국민들의 권리를 알기 어렵다.²²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원회는 단일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 매매 관련 법제, 보험계약 관련 법제 및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의 영역에서 여러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2015년 9월 12일 "디지털 콘텐츠 제공 계약 고려사항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이하 '제안서'라 함)"이 제안되었다.²³ 이를 일명 "현대 디지털 계약 원칙(Modern digital contract rules)"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⁴

이 제안의 목적으로는 유럽이라는 디지털 단일 시장의 빠른 성장을 위해 계약법 관련 국경의 장벽을 제거하여 법적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권리보장 및 통일적인 규칙제공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 증진을 제시하고 있다.²⁵

앞서 설명한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한 디지털 계약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탈지역기반의 계약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EU에서는 모델 계약용어를 개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를 위하여 EU 집행위원회는 클라우드 제공자와 사용자들 간의 서비스 단계 동의서에 사용하는 유럽 모델 계약용어를 개발하고 소비자 및 소규모 기업을 위하여 「유럽 공통매매법(Common European Sales Law)」에 모델용어와 조건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핵심적인 모델 계약용어 및 조건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사용될 실용적인 계약용어들을 제공하려는 것이다.²⁶

이러한 표준계약의 도입방법으로 표준서비스약관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서비스제공자의 약관을 통해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 측의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면책약관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²⁷

5. 시사점

26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Unleashing the Potential of Cloud Computing in Europe", 2012. 9. 27 p.12-13

27
박영규, 앞의 논문, 123쪽.

28
미래창조과학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 ICT 융합 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2016. 5. 18, 3쪽 참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은 개인정보의 보호, 보안, 서비스 제공, 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의 보완 또한 요청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여러 가지 서비스의 확대가능성과 탈지역기반을 서비스의 특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에 관한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입법된 이후에도 계속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국제적인 논의의 수용과 표준화가 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규제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으나 기존의 클라우드컴퓨팅의 탈지역기반 등 관련 쟁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이 아닌 국내에서의 금융, 의료, 교육분야에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시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²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특성으로 하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법제가 제대로 정착,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정보통신 기술의 표준화만큼이나 정보통신 관련 법제 수준의 표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제야말로 여러 국가의 법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각 국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정해지는 국제기구의 지침 제정 등의 결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미래산업 분야 규제이슈에 관한 연구(VI) -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